

(질의회신)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포함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「토지보상법 시행령」 제38조의2제1항의 도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.

[협회 2017.11.28. 감정평가기준팀-1545]

### 질의요지

‘대구 ○○단지 ○○지구’를 2013년 12월 30일에 지정하고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2015년 5월 20일 토지세목에 대한 고시를 한 경우 「토지보상법 시행령」 제38조2 제1항의 “도로,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”에 해당되는지 여부

### 회신내용

‘대구 ○○단지 ○○지구’의 지정고시에 해당 진입도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세목고시만을 2015년 5월 20일자로 하였다면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재생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므로 「토지보상법 시행령」 제38조2제1항의 “도로,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”으로 볼 수 없고, 해당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재생사업과 별도의 공익사업에 해당되므로 “도로,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.